

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호
의결년월일	2005. 7. . (제 17 회)

제출일자	2005. 6. .
제 출 자	계 룡 시 장

1. 개정이유

- 2005. 4. 19日 조직개편에 따라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(2003. 12. 10 조례 제22호)를 市의 조직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
-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확대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중 당연직 위원(제2조제3항)
 - “실·과장”을 “본청 실·과장, 직속기관장 및 당면사업추진단장”으로 개정코자 함.

3. 참고자료

- 신·구조문대비표
- 관계법령
 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(자문기관의 설치)

계룡시 조례 제 호

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실·과장”을 “본청 실·과장, 직속기관장 및 당면사업추진단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구성) ①~②(생략) ③당연직 위원은 실·과장으로 하고,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④(생략)	제2조 (구성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본청 실·과장, 직속 기관장 및 당면사업추진단장----- ----- ----- ----- ④(현행과 같음)

관 련 법 령(발 취)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42조 (자문기관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·권고·건의·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